

2020년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제3강

-“성소수자난민” 심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연: 이진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녹취정리: 고일해

1

안녕하세요. 난센포럼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세 번째 강좌를 만나러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진화라고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한국사회에 도착한 성소수자난민들이 난민지위 심사과정 및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먼저 저희 네트워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성소수자난민을 적절히 조력할 방법을 모색하던 활동가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연대체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난민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들 및 개인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4

벌써 햇수로 사 년, 만으로 삼 년여 활동해 왔는데요. 그간 성소수자난민과 HIV감염인 난민을 만나 직접 조력하는 한편, 운동 사회 속에서나 대중에게 성소수자난민 의제를 알려내기 위한 자료제작/배포, 강의, 홍보사업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난센에서 기회를 주셔서 작년 난센포럼에서도 저희 활동 내용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

성소수자난민 심사과정 상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짚어 보기 전에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가 만나온 소수자난민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네트워크가 지난여름 소셜펀치라는 사회운동 모금 플랫폼에서 진행한 "소수자 난민 생계비 지원" 모금의 상단 화면입니다. 두 난민 분 얼굴이 일러스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분이 트랜스여성 난민 샬라 님, 왼쪽분이 HIV 감염인 난민 엠마 님입니다. 알음알음 저희 네트워크와 연이 닿아 관계를 맺은 뒤 꾸준히 소식을 나누며 지내던 가운데, 팬데믹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셨다는 말씀을 듣고 당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모금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3강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두 분이 직접 풀어놓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6

먼저 트랜스여성 난민 샬라의 이야기부터 같이 만나볼까요.

Syrah,

한국 생활에 관한 메시지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살고 싶지 않아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저는 트랜스젠더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은 보수적인 면이 강하긴 하지만 이 때까지 큰 차별을 경험해본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사려 깊은 편이구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한국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해줘서 제가 여기서 오랫동안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서울 그리고 한국 사랑해요!!



Syah,

기부자에게 하고 싶은 말

비자 연장을 하러 출입국 사무소로 갔을 때 한 여 직원이 저는 난민 지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수가 없어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운이 좋게 이민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고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활동가들을 만나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서울에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하는 것은 꿈도 못 꾸었을 거예요. 그들을 통해 생활비와 의료비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공익변호사를 소개받아 난민 지위 재신청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정말 행운이자 축복이었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손길이 닿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샤 님은 또 다른 트랜스여성 난민 분과 저희 네트워크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통역도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의 조력을 받고 계실 뿐 아니라 스스로 다른 난민분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HIV 감염인 난민 엠마 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Emma,

한국 생활에 관한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저는 HIV 감염인지만, 한국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고, 첫째는 벌써 초등학교생입니다. 방과후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둘째는 이제 한국 나이로 벌써 세 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세 식구의 살림이 크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 있다는 사실에, 우리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Emma,

기부자에게 하고 싶은 말

최근에 의료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는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제가 매일 매일 먹어야 하는 HIV 치료제도 의료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위한 마스크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고, 일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료와 월세를 내야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와 함께 HIV에 감염된 여성들이 어떻게 질병과 차별에 싸워왔는지에 관한 영화를 함께 본 건 정말 의미깊은 행사였습니다. 이런 자리가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저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트워크는 다른 단위와 연대하여 HIV 감염인 여성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적 있습니다. 이때 엠마 님은 상영 후 패널 토론에 참여하여 여성이자 감염인으로서 난민이 된 경험을 청중과 나누어 주셨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큰 분입니다.

샤 님과 엠마 님을 포함하여 현재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소수자 난민은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저마다 불안정한 체류 지위, 재정상태, 건강문제 등과 씨름하며 버티고 계십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을 놓지 않고 한국 사회의 여러 장벽을 헤쳐 나가고 계십니다. 네트워크는 이분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한국 사회를 꿈꾸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8

그럼 이제 성소수자난민 심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성소수자난민이 누구이며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략히 짚은 다음 성소수자난민심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파헤치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끝으로는 네트워크 활동 계획을 소개해 드리고 맺겠습니다.

9

앞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모두 네트워크가 올해 펴낸 <<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2: 성소수자난민심사 과정에서의 인권보장>> 이라는 자료집의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네트워크 실무진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집필하여 만든 문서입니다. 오늘 발표는 제가 하지만 발표 내용은 저의 개인적 성과물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집단적인 성과물임을 꼭 밝혀두고 싶습니다.

10

이것은 자료집 표지입니다. 앞표지 뒤표지를 같이 펼친 이미지입니다. 목차의 2번 항목과 3번 항목이 오늘 3강에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본 자료집은 아직 피디에프 온라인 배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실물 자료집을 우편으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네트워크로 문의해주세요. 이후피디에프 자료집 배포 소식도 기다려주세요.

11

성소수자난민은 누구일까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성별표현Gender Expression, 성적특징Sex Characteristic 등을 이유로

살해, 고문, 임의적 구금, 성폭력,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공포로 인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게 된 사람들. 난민협약(1951) 및 대한민국 난민법(일부개정 2016) 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으로 난민 사유가 인정이 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성소수자 난민만 따로 통계가 잡힌 바는 없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난민 혐오와 성소수자 혐오는 성소수자 난민의 난민지위인정 절차에도 배어있다. 성소수자 난민은 대부분의 경우, 적극적인 보호 대상이라기보다 가급적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한국 사회도 결코 성소수자 차별에서 자유롭지 않은 시공간임에도 성소수자난민이 한국에 도착하여 비호를 구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성소수자난민이 목적지를 한국으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접한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반드시 한국으로 갈 것이다, 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국에 도착하기보다는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 항공기 노선 유무 등의 이유로 한국에 도착하는 분들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성소수자를 범죄시하여 강도 높게 처벌하는 사회에 비하면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성소수자에게 덜 위험한 시공간이기도 합니다.

12

보시는 이미지는 ILGA, 즉, 국제성소수자협회에서 제작한 지도로, "세계의 성적 지향법: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의 범죄화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의 보호까지"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현황을 색깔의 구분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2019년 12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한 지도입니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강력하게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일수록 더 짙은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베이지색은 성적지향을 매개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도 성적지향에 대한 범죄화도 없는 국가를 나타냅니다.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를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 국가일수록 더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짙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사형으로 처벌합니다. 실제로 네트워크가 만나 온 성소수자난민 분들은 대부분 붉은색 계열로 표시된 국가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도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시하는 법이 남아있습니다. 군 형법상 추행죄(92조6)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매개로 한 차별금지까지를 아우르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또한 십 년이 훌쩍 넘도록 안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용납할 수 없다는 혐오세력의 영향

력이 작지 않은데다가 정치권 자체도 별다른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만큼은 성적지향을 매개로 한 차별 행위를 평등권 침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그간 유엔이 발표한 성소수자 인권 보호 관련 결의안에 꾸준히 서명하며 성소수자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흐름에 함께 하고자 하는 행보를 보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제스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몹시 아쉬운 현실입니다. 성소수자인권 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시민 사회가 계속 요구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 성적지향에 대한 보호의 수준만을 보여 주지만 이를 통해 성별정체성에 대한 보호의 수준도 어느 정도 아울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성애를 실천하지 않는 동성애자나 양성애자에 대한 억압과 주어진 성별과 그 규범에 따르지 않는 트랜스젠더 및 젠더퀴어 등의 존재에 대한 억압은 맞물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3

그럼 이제 성소수자난민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한국 사회도 결코 성소수자 친화적인 시공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수자난민이 박해를 피해 자국을 도망쳐 도착한 곳이라고 해서 성소수자의 낙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먼저 성소수자난민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난민신청자에게 입증책임이 과도하게 지워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성소수자난민의 경우 성소수자라서 박해의 위험을 느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박해 사실 입증과 성소수자 정체성 입증이라는 복합적인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관련해서 성소수자난민을 조력해 오신 분들이 해주신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4

“국가에 의한 박해가 발생했어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난민지위를 불인정한다. 출신국에서 성소수자에게 사형선고를 하는 국가정황이 있는 사례였음에도 ‘증거가 없으니 신청자의 진술이 신뢰가 안 간다’, ‘성소수자로 자신을 드러내는 활동이나 표현을 안 했으니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인정을 했다. 사실 증거가 없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인정한 사례가 특히 법원에는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법원은 증거에 집착하는 편이다.”

“출신국에서 경찰에게 쫓기는 정황이 있는 신청자였는데,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체포영장이나 수배서가 없지 않느냐’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서는 국가정황에 따라 경찰에게 쫓기는 경우 체포영장이나 수배 문서 등이 없을 수도 있다. 문서가 나오면 도망가니까 그냥 집으로 체포하러 오는 것이다. 하지만 심사주체는 문서가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 한다.”

15

“문서가 있어도 보통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가에 의한 박해의 경우, 공문서가 있어도 박해주체가 쓴 문서이기 때문에 박해주체에게 문서의 진위 여부를 물어볼 수가 없다. 난민의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어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출신국의 외교부를 통해 문서 진위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한국 영사가 확인해서 문서 진위를 입증했다. 현지 변호사의 도움이 있었던 운이 좋았던 사례다.”

“신청자를 도와주는 본국의 단체가 있었는데, 단체가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신청자의 성적지향을 이야기하면서 그 단체를 언급했더니, 출입국에서 이 단체를 확인하겠다고 대사관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했다. 출입국은 단체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가짜 단체다’,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해서 알아보니 그 단체는 본국에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16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지워지는 가운데, 신빙성은 신빙성대로 의심받습니다. 주장이 믿을 만 한지를 봐야 하는데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경향이 심사관들로부터 나타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전무결한 진술이 아니면 다 거짓이고 사기라는 것입니다.

17

“법원은 미래의 박해 위험을 판단하기보단 이 사람이 믿을만한(credible) 사람인가를 본다. 이 사람이 믿을 만하든 하지 않든 박해 위험이 있다면 난민인데, 자꾸 그 사람의 신빙성을 파악하려고 한다.”

“진술에 대해서도 ‘작위적이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이를 ‘작위적으로 제출했다’, ‘원고의 전체적 진술이나 행동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출입국 행정 더 나아가 법 질서에 대한 존중의식이 현저히 떨어져 원고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등으로 판단했다.”

18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고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게 모순됐고 안맞는다’ 식으로 판단한다.”

“교제하던 사람 이름이 면접 조사 과정과 재판시 본인 신문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름을 들리는 대로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름 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증언한 성적지향을 처음 고민하기 시작한 나이가 면접 당시와 다르다는 것도 이유였는데, 이는 비슷한 시기였고, 불과 1-2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난민 여성의 경우 한국에서 생계 유지나 취업이 쉽지 않은 여건이라 다른 외국인 남성과 교제하기도 하는데, 그 사실을 가져와 신청자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질문하고 그 대답을 얻는 게 아니라 불인정하기 위해 신빙성을 언급한다.”

“난민 면접에서 여성하고 찍은 사진이 있으면, ‘동성애자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여성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전혀 믿지 않는다. 재판에서도 ‘출신국 상황 때문에 성적지향을 숨기기 위해서 행동했다’,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설명해도 안 믿는다.”

19

입증 책임을 나눠지려 하지 않고 난민신청자에게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심사관들이 성소수자난민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를 끌어안고 신청자를 만납니다. 난민은 일단 다 거짓말쟁이일 거라는 편견과 성소수자라면 모름지기 숨기고 살 일이지 뭘 내놓고 살다가 박해를 받는다고 뭐라 하는 거냐는 식의 무지와 경멸이 성소수자난민심사 여러 경우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대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자기 진술을 하고 박해 위험을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입니다. 크게 다음 네 가지 정도로 문제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 i) 성소수자 정체성 증명의 어려움
- ii) 편견에 기반한 사생활 침해적 질문 (성행위 관련 사항에 질문 몰림)

iii) 정체성 은폐 discretion에 대한 몰이해

iv) 난민신청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및 면접 환경의 문제

20

성소수자난민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는 일단 신청자가 성소수자 정체성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가 생존을 위해 정체성을 숨겨야만 했던 과거를 그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부정하는 증거로 간주
- 성소수자 정체성의 보편적 특징이나 일반적 성격이 있으리라 전제
- 서구 중심 정체성 서사나 용어에 맞지 않는 진술을 허위로 간주
- 정체성의 유동성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변화한 정체성을 신빙성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

21

신청자를 조력해 오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면접에서 이 사람은 성소수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물증을 찾거나 그런 대답을 유도하는 형식으로 질문들을 던지니 ‘너는 성소수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으로 면접이 채워진다. 성소수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답은 계속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그 자체로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성소수자 정체성의 경우, 종교 관련 난민 사건에서 본인의 신념을 증명하라는 요구처럼 그 증명 자체가 어렵다. 조력자 본인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도 한계가 있다보니 신청자의 정체성을 어떻게 증명할지 고민이 많았다. 신청자가 상담기록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방법이 과연 적절한가 의심스럽기도 했다. 결국 그 당시엔 신청자의 경험을 최대한 세밀히 적는 게 최선이라고 느껴졌으나 아직도 잘 모르겠다.”

“성소수자 신청자의 박해 경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 소수 종교 신자인데 박해가 두려워서 외부로 신앙을 드러내지 않은 경우와 유사한 것 같다. 대개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즉, 작은 사건들이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쌓이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 타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기에 대한 진술이 중요할 것 같다. 조력자로서는 신청자의 정체성을 입증해야 할 때 진술의 구체성 이외에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22

“본인이 성소수자인 걸 언제 깨달았냐’는 언제나 나오는 질문이다. ‘구체적인 사건, 언제 몇월 며칠인지를 말해라’ 식으로 질문하는데, 어느 하나의 사건 때문에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삶의 궤적이 있고 그 과정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서서히 알게된 것일 텐데 그 중 단 하나만 고르라는 것이다. 사건 하나만을 통해 설명할 수 없다보니 심사관이 원하는 일관적인 진술은 어렵고, 그러면 심사관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법원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이란 게 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고 경계가 불분명한 개념이다 설명했으나 판사도 출입국 직원도 이해를 못 했다.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를 통해 성소수자 정체성과 성적행동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성소수자 정체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결국은 판사가 이해를 못 한 것 같다.”

“특정 국가의 경우 문화적 맥락이 달라 성소수자 정체성 개념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게다가 정체성이란 복잡하며, 그 확립 과정도 정의도 다양하고, 따로 정답이 있는 개념이 아닌데, ‘서구적 정체성’만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른 형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성소수자라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

23

성소수자에 대한 제한적인 이해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성소수자 난민은 난민지위심사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성적인 존재로 상상되면서 사적인 부분에 대해 지극히 침해적인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향들을 나타냅니다.

- 성소수자에게 정형화된 겉모습, 성격, 행동양식을 기대하는 편견
- 성소수자 정체성을 오직 특정 성행위 경험하고만 연결짓는 몰이해
- 끌리는 사람 스타일이나 연애 경험 혹은 성관계 방식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위주로 질문하기

- 신청자가 느끼는 박해 받을 공포에 대한 집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신청자가 내면화된 혐오로 자기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 없음
- 무심경한 질문으로 이미 트라우마를 입은 신청자에게 다시 트라우마 입히는 효과

24

조력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민 심사 면접 질문이 너무 안 좋다. 면접 조서를 보면 ‘정상인이 되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느냐’는 식으로 심사관의 편견이 드러나는 질문들도 있었고, ‘성관계를 얼마나 해봤냐, 자주 해봤냐’, ‘성관계를 할 때 여러 명과 해 본 적 있느냐’ 등을 물어보기도 했다. 이런 질문들을 왜 하는가 싶은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성소수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은 것 같다. 심사관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편견 어린 질문들을 하고, 그 범주에 안 맞으면 성소수자가 아니라고 판단해버린다. 향후 박해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에는 개념조차 제대로 안 잡혀 있어서, 소위 ‘가짜난민’인지 아닌지에 집중하며 사람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문제이다.”

“면접 조서를 보면 심사관 본인이 개인적인 흥미로 질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의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성관계 할 때 신청자는 어떤 역할이었나요? 탑, 바텀 중?’ ‘신청자의 파트너가 몇 명이나 있었는지 말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파트너의 어떤 점에 주로 끌리나요?’ ‘만났던 파트너랑 동거했는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게 된 사유를 말 할 수 있나요?’ 신청자의 파트너가 몇 명 있었는지, 난민사유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 심사관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 같은, 왜 물어보는 건지 싶은 질문들이 있었다. 정작 박해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다. 2/3 이상은 신청자가 성소수자인지 확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질문인데, 그 중에서도 난민사유와는 관련이 없어보이는 개인 흥미 위주의 질문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25

“성소수자 난민이 여타 난민과 다른 점은 성소수자 난민은 주로 스스로를 숨기고, 본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의 경우 종교적, 문화적인 이유로 성소수자로 사는 것은 최악이라고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배우면서 자란 난민들이 있고, 본인이 성소수자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원했던 난민 중에 난민 면접에서 ‘난 지금은 성소수자 아니다, 나는 별받을 짓을 했다’며 죄책감을 표현했는데, 심사관은 ‘성소수자 아니라고 했으니 너는 성소수자가 아니지 않느냐’하고 기각한 경우도 있다.”

“출신국 정황에 따라 성소수자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에서 나고 자란 난민은 본인의 정체성에 대해 당연히 자신감을 가지기 어렵고, 자기부정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난민 신청 초기부터 본인이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못 한다. 같은 국가 출신 친구에게 난민 신청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본인 정체성을 말할 수 없으니 다른 난민사유를 신청서에 적어서 냈고, 난민 심사 절차가 다 끝난 후에야 조력자에게 털어놓은 난민도 있다.”

26

박해 받기 싫으면 성소수자 정체성을 은폐하면 되지 않는가, 은폐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라는 식의 태도 또한 심사 과정에서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숨기고 살면 박해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간주
- 드러내고 활동하며 박해 받은 경험(만)을 정체성의 신빙성 판단 요소로 봄
- 보호받아야 할 신분을 알아서 숨기고 박해를 피했어야/피해야 한다는 메시지
- 신청자를 박해 받을 것인가 자기 억제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선택지 안에 가두려고 함
- 다른 박해 사유(가령 종교)의 경우는 숨기고 살아야만 하는 상황 자체를 박해 받을 공포로 인정하기도 하는데 성소수자의 경우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7

조력자들도 이 부분을 엄청 답답해합니다. 숨기고 살아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걸 심사 당국이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력자들의 말

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성소수자 관련된 판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숨길 수 있다’, ‘조용히 살면 된다. 그러면 처벌 안 받고 잘 살 수 있다’ 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박해다. 해외 판례는 이 사실이 확립이 되어 있는 것 같다. 한국은 판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판례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내야 하고, 그래야 또 출입국에도 영향이 간다.”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성소수자 난민은 본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은 조금 불편하게 사회적으로 제약을 당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난민협약상 박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백하게 기재하는 바람에 다른 판결문에서도 이런 뉘앙스들을 당당하게 기재한다. 종교 박해의 경우에는 같은 논리로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 자체를 박해로 보고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성소수자 정체성도 같은 논리인데도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은 박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

“난민 면접에서 ‘성소수자로서 활발하고 왕성한 활동을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상하다. 유명한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를 아는지, 이름을 아는지 물어본다. 유도 질문할 때도 ‘이 유명한 인권활동가의 성별이 뭔지 아느냐’부터 물어본다.”

“성소수자 정체성을 밝히고 박해 받은 경험이 있어야 난민지위를 인정해준다.”

“처벌을 통해 사형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 정황이 분명한데, 외부로 활동하거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박해받을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되었다.”

28

난민신청자를 적극적 보호 대상이 아닌 잠재적 위협 요소로 보는 식의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면접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환경 자체도 열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모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범죄자처럼 난민 면접은 피의자 심문처럼 대하는 태도
- 출입국 관리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접근

- 난민 보호가 아닌 난민 걸러내기에 가까운 심사 경향
- 난민심사관 수의 절대적 부족
- 면접 시설 및 필요 장비의 노후화

29

조력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창기에 출입국에 난민과가 없었던 시기에는 법무부의 검찰 수사관을 하던 사람이 심사를 담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수사하던 입장에서 신청자들을 바라보니 그들을 피의자로 취급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심문하고 자백 받듯이 신청자들도 가짜 난민인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형태로 면접이 진행된다. 이런 태도가 난민 제도 전반에 배어 있고, 성소수자 난민에게는 더욱 더 가중된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난민 전체를 수용하고 싶지 않아하고, ‘어떻게 하면 난민을 받지 않을까’ 혹은 ‘기본적으로 난민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든 이 사람들의 진술의 불일치함을 찾아내고야 말겠다’, 이런 태도가 배어 있는 것 같다. 출입국 난민 면접 조서나 기록들을 보면 난민 전반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있다. 게다가 그 중에서 성소수자 난민은 심사관이 ‘성소수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면접에 들어가니 더 취약한 부류이다.”

30

“비단 성소수자 난민 사건 뿐 아니라 어느 난민이건 당사자의 신뢰를 얻고 면담을 해야 하는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다. 심사관은 무관심하다.”

“재판 당시, 당사자신문 질문을 세분화해서 촘촘하게 질문지를 가져갔더니 판사가 ‘간단히 하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어쨌든 심사관은 그 면접의 책임자니까 분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심사관이 좌지우지 한다. 증거를 많이 제출하면 ‘이건 또 뭐야’ 식의 태도가 확실히 있다.”

“난민신청자 본인은 억압받는 상태에서 면접본다고 생각하는데,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억압보다는 무관심이다. 신청자의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그러기엔 심사관들에게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워낙 신청자는 많고 시간은 부족하다보니.”

31

“조서를 보면 난민 면접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동석을 하면 7시간 가까이 하기도 한다. 심사 환경도 장기간 집중해서 심사를 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온라인 매체 사용에 능숙한 난민 분들이 계시다. 온라인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기도 하셔서 소셜미디어에 본인의 상황이 드러난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다. 그걸 증거로 제시했는데, 심사관들은 컴퓨터로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USB도 보안문제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 증거 자료로 내려면 꼭 CD로 구워와야 한다고, 그것도 안 되면 개인 핸드폰으로 확인한다고 하셨다.”

“난민 면접 녹음을 하긴 하는데, 녹음기 상태가 열악한 것 같다. 녹음 자료를 받아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 타자치는 소리만 들리고 신청자가 말하는 소리는 잘 안 들렸다. 법무부 측과 이야기해보니 심사관들도 바꾸고 싶는데 공무원 정부 특성상 ‘덜짱’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한다. 컴퓨터도 아직 윈도우 XP를 쓰는 곳이 많고, 아무리 오래된 기기여도 작동하면 유효한 장비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한다. 휴대폰으로 녹음해도 잘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안 된다고 한다.”

32

이제까지 성소수자난민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과 공정성 부족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필요한 절차와 정보와 권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난민지위심사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 가운데 하나인 통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 통역수준과 윤리, 통역의 실질적 보장 여부, 그리고 성소수자난민 통역이 갖는 특수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33

네트워크가 만난 성소수자난민과 조력자 분들은 거의 대부분 통역의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통역 수준 보장 안 됨 (부실한 통역, 허위 통역)
- 신청자가 구사하는 언어 원문은 기록되지 않고 통역 거친 한국어로만 면접 조서가 작성되는 한계
- 통역자의 가치중립, 비밀보장, 윤리의식 부족
(난민 통역자 대상 정규 교육 부재)

34

조력자 분들이 난민 통역 문제를 꼼꼼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통역이 너무 부실하고, 특히 방언이 워낙 많은 아랍어 통역이 제일 심각하다. 통역 문제에 대한 대비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이중통역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청서에도 언어 뿐 아니라 어느 방언을 사용하는지도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야 한다.”

“해외 지침들을 보면 신청자 진술을 원문 그대로 기록하라고 하는데, 한국은 어딜 가도 원문 그대로 기록 안 한다. 통역만, 한국어로만 기록한다. 난민 면접에서 통역 잘못 되어서 이상하게 적히면 그걸 법원에 가져가서 입증할 수도 없다.”

“통역인 풀은 출입국에 있는 것 같고, 따로 교육과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가끔 일회성 교육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따로 자격요건이 있거나 정규화된 교육이 있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다.”

“허위 통역 사건도 있었지만, 통역에 대한 교육이 전무한 것도 문제다. 심사관들도 엉망이지만 소집교육이라도 하는 절차가 있는데, 통역인에 대해선 그런 절차가 전무하다.”

35

“통역인들이 면접 내용에 대해 비밀보장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출입국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본인이 통역했던 내용을 발설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드러내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통역의 질도, 비밀보장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통역인이 음박지르는 경우도 있고, 도와주려고 하는 통역인들도 가끔 가다가

있다. 사실 난민 면접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착오만 없이 하더라도 난민인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소송에서도 제일 많이 다투는 게 면접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거다.”

“통역인의 역할이 컸다. 건조하지 않게 와닿게, 진술서를 원문의 표현대로 절절히 번역을 잘해주셨다.”

“법무부에서 지급하는 외국어 통역 비용 중 난민 통역이 제일 저렴한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시간당 5만원 이하를 제공하는데, 그러다보니 인증을 하고 통역 질을 높이려고 하면 통역인이 구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역을 아예 못 쓰니 정부에서도 통역 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는 것 같다. 시험이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통역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형식적으로라도 하려는 노력은 있는 것 같다.”

36

통역의 수준도 수준이지만 통역이 애초에 제대로 보장이 되는가도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난민협약(1951)이나 국내 난민법(14조)는 난민지위인정 절차 최소요건으로 명시하나 실질적으로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 (통역자 부족, 심사관의 무성의한 태도 등)

-통역자 선택권의 실질적 제한

-통번역 지원 및 면접 녹화 등의 권리 있음을 신청자가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함

37

조력자들의 증언을 만나보겠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통역인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그게 어렵다. 심사측은 이것이 마치 범죄자가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통역 지원도 그렇고, 영상 녹화 가능한 점이나 이런 정보는 조력자도 몰랐고 난민들도 전혀 모른다.”

“사실상 통역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다. 난민 신청서에 본인이 주로 쓰는 언어를 쓰면 그 언어와 관련된 사람을 통역인으로 선정을 하는데 누가 선정될지는 알지 못한 채 면접장에 온다. 가끔 바뀌달라는 분들이 있으면 심사측은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다. 통역인 선택이 권리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다.”

38

성소수자난민 통역의 경우 신경을 더 써서 챙겨야 할 고유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소수자 난민통역의 특수성이라 부릅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성소수자로서 겪어온 낙인과 괴롭힘을 심사과정에서 되풀이하여 겪게 될 위험이 큼
- 같은 국가 출신의 통역자는 신청자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음
- 자국어에 배어있는 성소수자 혐오로 인해 자국어 진술을 기피하는 신청자도 존재
- 성소수자 관련 용어나 성소수자 경험에 무지하고 편견을 갖고 대하는 통역자와 심사관

39

조력자들이 지적하는 바를 살펴볼까요.

"성소수자 난민 당사자의 경우, 자국 통역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했다. 본인에 대한 소문이 나거나, 본인의 현위치가 알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사실상 심사측의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

“난민 당사자들은 통역인이 누구인지, 신청자와 같은 국가 출신인지 신경을 많이 쓰신다. 전통적인 문제인데, 출입국 입장에서는 같은 국가 출신이면 말이 잘 통할 거라 생각해서 데리고 오는 것이다. 영어를 잘하는 신청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한국 분이 통역했다. 영어를 못 하는 국가 출신의 신청자는 주로 통역으로 자국민을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성소수자 난민 당사자 중에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던 분이 계셨다. 모국어의 성소수자 관련한 단어들이나 어휘가 혐오적이라고 설명하셨다. 혐오감이 배

어 있는 단어가 많아서 모국어로 말하면 본인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이 더
러운 사람이 되는 느낌이라서 모국어로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 그래서 조
력 중에도 영어로 소통했다. 출입국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면접 일정을 다
시 잡고 통역인 부르기가 귀찮아서였는지 그대로 대충 면접을 진행했다는 거다.
모국어로 하다가, 영어로도 하다가 한국어로도 하면서 면접을 진행했다고 한다.”

40

난민지위인정 심사는 길게는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 기간 동안 난민신
청자는 한국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야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
습니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남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의 난민법 체계는 난민 절
차의 단계와 결과에 따라 난민을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지위에는 별개의 비자와 그에 따른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난민인정자는 사회보장기본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호를 받고
가족결합의 권리 또한 보장되지만,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는 그렇지 않습니
다.

여기서는 심사 과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성소수자난민권리 보장의 생활적 측면
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41

성소수자는 이중삼중으로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난민인정자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보장도 미비하지만 난민신청자와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보장은 더욱 부족
-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과 폭력을 비호당국, 난민 수용국 내의 여러
공동체, 다른 난민 등으로부터도 겪을 위험
- 난민조력단체 성소수자 대표성 부족, 관련 전문성 부족
- 성소수자단체의 난민 지원 전문성 부족

42

조력자들은 다음과 같이 성소수자난민의 고립 양상을 짚어주었습니다.

“다른 난민신청자들은 (정치적 이유 등 여타 난민사유) 한국 내 같은 국가 출신의 지지 커뮤니티가 있기 마련이다. 취업 자리도 그 네트워크 통해서 알아본다. 그런데 만난 성소수자 난민 분 같은 경우는 한국 내 커뮤니티에서도 소문이 나서 지지망이 없었고, 그래서 취업도 간헐적으로 하셨던 것 같다. 나이도 있으셨고, 생활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 난민 인정 이후의 생활 지원도 참 문제다. 대사관에서 여권 갱신도 못 하시고, 난민인정자가 아닌 인도적체류자 지위를 받으면 한국 정부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한국에만 계셔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난민들이 서로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난민 커뮤니티가 출신국마다 다른 것 같긴 하고, 워낙 이주민 커뮤니티랑도 다를 수도 있다. 자국민이 당사자를 박해할 수도 있다보니 서로 이야기도 잘 하지 않기도 한다. 특히 성소수자 분들은 더욱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성소수자 난민은 난민 조력단체로 잘 오지 않으신다고 한다. 단체가 성소수자 정체성을 잘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이다.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 단체에 연락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다.”

“성소수자 난민 중엔 박해 경험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나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생활지원이 더 필요하다.”

“보통 난민 신청을 하면 소송하지 않는 한 심사 과정에서 면접 한 번 가면 끝이다. 이 절차에서 난민 당사자들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런 안내나 공지가 부족한 것 같다. 갑자기 아프면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것도 전부 문제다. 장기체류 하는 외국인면 다 받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처음 난민 신청하면 건강검진증도 가지고 오라고 한다. 황당했던 건, 이런 검진은 간단한 체크업인데, 쉽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없다. 검사비와 이런 저런 비용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비싼 대학병원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난민 신청자가 꽤 많다. 영어 가능한 병원이 대부분 없고, 외국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걸 안내하거나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곳은 대형 의료기관 밖에 없어서 더 그런 것 같다.”

43

체류 자격의 불안정함과 생계의 불안정함은 맞물려있습니다. 성소수자난민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 보다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난민의 일할 권리(난민협약, 주요 인권조약에 명시)에 대한 실질적 보장 미비
- 난민신청 이후 6개월 지난 후 단순노무 분야에만 취업 가능
- 한국 사회의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라는 적대적 환경
- 기본적 의식주와 건강권에 대한 현저한 위협

44

조력자 분들이 공히 지적하는 바도 바로 난민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동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난민 신청 초기에 가장 필요한 게 돈이다, 의식주.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해결하겠지만, 이것도 제한적인 경우가 있고, 당장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피난 온 당사자들도 있다. 무엇보다도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취업활동허가가 나오는 비자가 있어야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생필품이 없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더 문제는 비자가 없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다. 체류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니 취업도 못하고 너무 불안정하다.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한다.”

“한국에서 1년 이상 머물다가 난민 신청한 사람한테는 난민신청자(G-1-5) 비자를 주지 않는다. 출입국에서 난민 신청 접수는 받아줬지만 비자를 안 줬다는 건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지침이 있는 것 같은데 비공개라서 조력자들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당사자처럼 다른 비자로 들어왔다가 난민 신청하면 소위 ‘남용적 난민’이라고 보는 것 같다. 불법체류와는 다른 게, 난민신청자 비자는 안 주고 출국명령을 내린다. 그 다음에 출국명령 집행을 3개월 단위로 유예하는 거다.”

“난민사유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남용적’ 난민이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체류자격을 주지 않고 취업활동도 못하게 하는 것은 난민협약 취지에 반하는 일

이다, 라는 취지의 공문을 출입국 체류관리과와 난민과에 보냈다. 체류관리과는 ‘출국명령유예와 외국인등록증 회수는 난민과의 결정에 따라서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이라 소관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난민과는 ‘체류관리과에서 그랬어요? 아 닌데? 그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닌데?’ 서로 소관을 미루고 있다.”

45

이제까지 성소수자난민심사 과정상의 문제점과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난민이 생활하며 경험하는 어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점 마다 우리에게 여러 과제를 남겨주는데요. 크게 일곱 가지로 정리해 보면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난민을 범죄(자)화하는 심사절차 내 문제점 해결
- 2) 한국정부의 난민 심사 지침 공개
- 3) 심사주체(조사관, 판사 등)와 통역인 교육
- 4) 성소수자 난민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 5) 조력자 교육과 네트워크 마련
- 6) 본국 커뮤니티와 난민 커뮤니티의 노력
- 7) 한국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인권운동의 노력

46

마지막으로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가 앞으로 떠나갈 활동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47

법무부 난민심사관을 대상으로 성소수자난민 심사 가이드라인 작성/배포하고 법무부 난민과와의 비판적 협력 관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난민 관련 정기 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난민 당사자와 함께 하는 활동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난민 인권 운동 영역과 성소수자 인권 운동 영역이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해야 하는 활동 찾아나가고 있으며 성소수자난민 의제를 사회에 폭넓게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네트워크는 현재 사무국을 따로 둔 단체가 아니라 여러 단체와 개인의 느슨한

연대체 다보니 활동이 느릿느릿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대외 활동이 없을 때도 난민 조력을 지속하며 참여 단위별 역량과 네트워크 차원의 역량을 두루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근차근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48

네트워크가 발간한 자료나 집필한 기고문 등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페이스북: [facebook.com/rainbowrefugeeskr](https://www.facebook.com/rainbowrefugeeskr)

이메일: rainbowrefugee2017@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3강 성소수자난민심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